

보도 일시	2022. 3. 22.(화) 12:00 2022. 3. 23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22.(화) 12:00	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	책임자	과 장	김정연 (044-202-8870)
	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김현아 (044-202-8872) 최성필 (044-202-8874)

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

고용노동부, 화학물질 관리부실 사업장 엄중 조치 예고

- 화학물질 취급 ‘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’ 이행실태 감독 나서
 - ①유해성 주지, ②국소배기장치 설치, ③방독마스크 착용
 - 감독 시, 화학물질 노출수준 평가도 병행
 -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시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 예정
-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·감독

고용노동부,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 나서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*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지난 2월, 두O산업(창원 소재), (주)대O알앤티(김해 소재)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되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, 두O산업(주) 16명, (주)대O알앤티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

- 이번 감독은,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.
-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,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,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.

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·감독

-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.
 - 따라서,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.
-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,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,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·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.
 -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*를 받을 수 있고, 재정 지원**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.
 - * (기술지도사업)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,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컨설팅 (필요한 경우, 각종 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)
 - ** (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)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,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50%(10인 미만은 70%까지) 지원

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(유해성 주지, 국소배기장치, 호흡보호구)

-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밝혔다.

[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점검항목]

1. (유해성 등 주지)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·질병을 주지시키고,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
2. (국소배기장치 설치)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있는지
3. (호흡보호구 착용)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지

-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,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.

- 아울러,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*도 있었던 만큼, 감독 과정에서 작업 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.

* 두O산업(주)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약 3~6배, (주)대O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 트리클로로메탄 노출기준 초과

“화학물질 중독사고,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소지 높아”

□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

- “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”라면서
- “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,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,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

안전은
관리하는
것입니다

세척작업이 **당신의 건강**을 해칠 수 있습니다!

세척 작업

- ☑ 세척작업은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 묻어있는 그리스나 오일, 왁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. (※ 세척, 탈지, 함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)
- ☑ 세척제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, 대부분의 경우 빠른 건조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증기가 발생하여 중독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.



급성중독 증상으로

어지럽거나 쉽게 피로한 느낌, 메스꺼움, 두통, 황달 등이 나타날 수 있고, 오랫동안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.

건강
영향

중독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1 내가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해성을 알아야 합니다.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통해 세척제의 성분과 유해성 그리고 건강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.

☞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, 적절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합니다.



2 반드시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하세요.
대부분의 세척제는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작업장에 퍼져 나와 동료 근로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세척작업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, 작업을 할 때는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.

☞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성능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


3 작업시 방독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.
국소배기장치가 있더라도 작업방법에 따라서는 세척제 증기를 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. 마스크 착용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.

※ 특히, 세척조 안에서 청소,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송기마스크 착용하여야 하고, 외부에서 작업상황을 감시할 사할도 있어야 합니다.

☞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하며 적절한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하며, 필터나 카트리지 여유분도 갖추어 두고 있어야 합니다.



**중독증상이 나타나면
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.**

의사와 상담시, 자신이 하는 일과 어떤 세척제를 사용하는지를 함께 설명해주세요.
당신의 증상이 지금 하시는 일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근로자 건강센터 1577-6497

고용노동부 1588-3088

안전보건공단 1644-8595